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09
------	------

2020. 4. 2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2월 5일, 김정태 의원 외 9명

나.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0. 4.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정태 의원)

1. 제안이유

- 재정투융자기금의 조성 재원 중에서 “출연금” 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기금전출금” 으로 변경하여 용어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 쓰이는 용어 중 “출연금” 을 “기금전출금” 으로 변경함.
 - 출 연 금 :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기금전출금 :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기금의 조성 재원 중 “출연금” 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변경하려는 것임.

나. 재정투융자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 재정투융자기금(이하 “기금”)은 특별회계와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도시기반시설 조성, 자치구 영선사업,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특수사업, 특별회계·타 기금·공기업에 대한 융자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해 1992년부터 운용되고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¹⁾에 따른 통합기금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특별회계와 타 기금의 여유재원에 대한 총괄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있음.
- 또한, 일시적인 사업비 증가로 재원이 부족해진 특별회계와 타 기금에 대한 융자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주요 시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조 9,342억 9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9억 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2020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1,776,384	256,629	98,719	157,909	1,934,294

※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원금 회수, 지출에서 예치금과 예탁금은 각각 제외됨.

-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기금의 수입 규모는 5,268억 6천 6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이자포함) 2,142억 5천 3백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1,307억 1천 3백만원, ▶예치금 회수 1,395억 2천 4백만원, ▶예수금 187억원, ▶이자수입 236억 7천 6백만원임.

<2020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수입 계획>

(단위 : 백만원)

항 목	수입액	세부내역
합 계	526,866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14,253	서울교통공사 209,800 서울에너지공사 1,667 민간융자금회이자수입 2,786
예탁금원금회수	130,713	도시개발특별회계 50,000 수도사업특별회계 58,113 감채기금 18,000 도시재생기금 4,600
예치금회수	139,524	전년도 이월금 139,524
예수금	18,700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 10,200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8,500
이자수입	23,676	공공예금이자수입 2,687 특별회계 및 기금 예탁금이자 수입 20,989

- 발생 수입금은 5,268억 6천 6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예탁금 2,761억원, ▶예치금 1,520억 4천 6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987억 1천 8백만원 등에 사용하며, 별도의 사업비 지출은 없음.

<2020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지출 계획>

(단위 : 백만원)

항 목	지출액	세부내역	
합 계	526,866		
기본경비	2,000		
예탁금	276,100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245,900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30,200
예치금	152,046	여유자금 예치	152,046
예수금원리금상환	98,718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계정)	23,000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장관리계정)	18,446
		남북교류협력기금	4,143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33,34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5,000
		기후변화기금	3,500
		예수금이자상환	11,289

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안 제4조)

-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기금의 재원을 제4조 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하고 있음.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설립한 공기업으로부터의 예수금
3.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중 출연금(현물출자를 포함한다)
4. 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 및 예수금
5.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6.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7.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8. 그 밖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②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기금수립기준”)²⁾은 기금의 수입항목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9개 과목으로 정하고 있음[참고자료].
- 현행 조례상의 기금 재원인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민간 및 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자금으로, 민간이나 법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세입·세출예산 외로 설치·운영하는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는 성격이 맞지 않음.
- 이에 행정안전부는 2012년까지는 기존의 수입항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경비를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으나, 2013년부터 ‘전입금’으로 변경하였음.

<기금수립기준의 용어 변경 현황>

2012년	2020년
<p>① 출연금</p> <p>○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24) 및 기초단체의 광역단체에의 사업비 부담금(227-01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계상</p>	<p>① 전입금</p> <p>○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721)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222-01) 등 계상</p>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의2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을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조례의 ‘출연금’ 은 기금수립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용어 사용에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안의 ‘기금전출금’ 은 일반회계 등의 세출예산 과목이므로, 기금의 조성 측면에서 보면 수입항목인 ‘전입금’ 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
- 한편, ‘출연금’ 외에도 현행 조례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금의 조성재원 중 일부가 기금수립기준의 9개 수입과목에 부합하지 않고, 수입과 지출의 관점이 혼재되어 있어 일괄 정비가 요구됨.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서울특별시 직접 설치 경영 또는 설립한 공기업으로부터의 예수금 3.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중 출연금 (현물출자를 포함한다) 4. 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 및 예수금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중 기금전출금 (현물출자를 포함한다) 4.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등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현물출자를 포함한다) <삭제>

<p>5. <u>정부지원금 및 용자금</u></p> <p>6.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p> <p>7. <u>용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u></p> <p>8. 그 밖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②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잉여금 중 일정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p>	<p>5. (현행과 같음)</p> <p>6.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p>8. <u>그 밖에</u>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②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잉여금 중 일정액을 기금에 전출할 수 있다.</p>	<p>4. <u>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u></p> <p>5.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p> <p>6. <u>용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u></p> <p>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p> <p>8. <u>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u></p> <p>② (개정안과 같음)</p>
---	---	---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성만	02-2180-8055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개정안의 “기금전출금”은 일반회계 등의 세출예산 과목이므로 기금의 조성 측면에서 수입항목인 “전입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기금 재원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9개 수입 과목에 맞게 일괄정비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기금전출금”을 “전입금”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1항제3호)
- “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 및 예수금”을 삭제하고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 등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1항제4호~제8호)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09
----------	---------

제안년월일 : 2020년 4월 23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기금전출금”은 일반회계 등의 세출예산 과목이므로 기금의 조성 측면에서 수입항목인 “전입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기금 재원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9개 수입 과목에 맞게 일괄정비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기금전출금”을 “전입금”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1항제3호)
- “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 및 예수금”을 삭제하고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 등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1항제4호~제8호)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등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현물 출자를 포함한다)
4.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
5.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6. 융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설립한 공기업으로부터의 예수금 3.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중 <u>출연금</u> (현물출자를 포함한다) 4. <u>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 및 예수금</u> 5. <u>정부지원금 및 용자금</u> 6.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u>자금</u> 7. <u>용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u> 8. 그 밖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u>출연금</u> <u><신설></u> <p>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기금에 <u>출연</u>할 수 있다</p>	<p>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중 <u>기금전출금</u>(현물출자를 포함한다)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u>그 밖에</u>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u>기금전출금</u> <u><신설></u> <p>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기금에 <u>전출</u>할 수 있다.</p>	<p>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등 <u>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u> (현물출자를 포함한다) <u><삭제></u> 4. <u>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u> 5.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u>차입금</u> 6. <u>용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u> 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u>전입금</u> 8. <u>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u> <p>②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출연”을 “전출”로 하며, 안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등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현물출자를 포함한다)
4.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
5.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6. 융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설립한 공기업으로부터의 예수금 3.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u>중 출연금</u>(현물출자를 포함한다) 4. <u>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 및 예수금</u> 5. <u>정부지원금 및 융자금</u> 6.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u>자금</u> 7. <u>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u> 8. <u>그 밖에</u>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u>출연금</u> <p>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기금에 <u>출연</u>할 수 있다</p>	<p>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u>등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u>(현물출자를 포함한다) <p><u><삭제></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u>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u> 5.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u>차입금</u> 6. <u>융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u> 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u>전입금</u> 8. <u>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u> <p>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기금에 <u>전출</u>할 수 있다.</p>